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 공표

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,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심사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11. 1.

방송통신위원회

□ 숭인일 : 2011. 1. 5.

상호	대표	방송구역	심사결과	시청자의견
새빛넷유선방송	최한천	진접읍 팔야1~4리, 진벌1~2, 부평1~3,부평5~6리, 장현3리 일원	재허가	없
거문유선방송 	이종혁	삼산면 일원		
현대유선방송	장관호	약산면 일원		
양산유선방송	유재평	양산면 전역		
심천유선방송	김동만	심천면 일원		
영춘유선방송	이영숙	영춘면 전역		
남단양케이블방송	권순애	단성면, 대강면 일원		

[.] 끝.